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74호
2. 발 의 자 : 조상호 의원
3. 발의일자 : 2019. 1. 31.
4. 회부일자 : 2019. 2. 7.

II 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상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 등의 행위에 따른 공익 제보 시의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억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하고, 포상금 지급시 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포상금 지급액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공익신고의 적극적인 유도에 기여하고자 함.

III . 주요내용

1. 지급기준별 포상금액의 포상금액 중 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라는 제한규정을 삭제하고, 포상금액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확대함(안 별표).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2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안건 참고)
3. 기 타

○ 입법예고(2019. 2. 12.~2. 19.) 결과: 의견 없음.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31일 조상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74호로 발의되어 2019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 등의 행위에 따른 공익 제보 시의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익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 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해 포상금의 한도액을 기존 1 억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 려는 것입니다.

[표1] [2017~2018년 포상금 지급 실적]

(단위: 원)

| 연도 | 공익제보 건수 | 포상금 지급 건수 | 본 예산 편성액 | 지급 결정액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2017 | 187 | 7 | 31,300,000 | 52,000,000 |
| 2018 | 239 | 4 | 51,300,000 | 10,000,000 |
| 계 | | 11 | 82,600,000 | 62,000,000 |

-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공익 제보 건수에 비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적고 건당 평균 포상금 액도 560만원 수준으로 현 상한액에(1억원) 비해 낮은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.¹⁾

1) 2017년의 예산대비 초과부분은 2017년에 지급결정이 있는 후 2018년에 지급되었음.

[표2] [17개 시도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상한액 비교]

| 시도 | 구분 |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교육청에서는 부패행위 신고만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, 공익신고를 대상으로 교육청 자체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음 | | 비 고 |
|----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| 포상금 한도액 | 포상금 지급 시 금품 향응 수수액 대비 제한 | |
| 부산 | 조례 | 5천만원 | 5배 이내 | 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 |
| 대구 | 조례 | 5천만원 | 20배 이내 | 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음- 별도 규칙 |
| 인천 | 조례 | 3천만원 | 20배 이내 | 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함-별도 조례 |
| 광주 | 조례 | 2억원 | 10배 이내 |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조례 |
| 대전 | 조례 | 3천만원 | 10배 이내 | 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 |
| 세종 | 조례 | 3천만원 | 10배 이내 | 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 |
| 울산 | 조례 | 5천만원 | 10배 이내 | 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 |
| 경기 | 조례 | 3억원 | 10배 이내 | |
| 강원 | 조례 | 5천만원 | 10배 이내 | 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 |
| 충북 | 조례 | 3천만원 | 10배 이내 | 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 |
| 충남 | 조례 | 5천만원 | 10배 이내 | 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 |
| 전북 | 조례 | 3천만원 | 10배 이내 | 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 |
| 전남 | 조례 | 5천만원 | 10배 이내 | x |
| 경북 | 조례 | 5천만원 | 10배 이내 | 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 |
| 경남 | 조례 | 3천만원 | 10배 이내 | 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규칙 |
| 제주 | 규칙 | 1천만원 | 10배 이내 | (공익신고 한정)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음 - 별도 조례 |
| 평균 | | 6천 5백만원 | 11배 이내 | |

- ※ 위 표에서 “공익신고”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서의 공익신고 “부패행위 신고”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
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의 부패행위 신고임.
- ※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전라남도를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 양자를 별도 조례
와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포상금 자체 지급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.(전 시도교육청이 포
상금 지급 시 금품 . 향응 수수액의 5 ~ 20배로 제한)
- ※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부패행위 신고만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음.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포상금 상한액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보면 [표
2]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전국 평균액(6천 5백만원) 보다
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학교수, 학생수, 재정규모 등 비슷한 규모의
경기도(3억원)와 비교하여 보면 1/3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.

- 이런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이 공익제보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은 공익제보의 적극적인 유도를 통한 교육행정의 공정성 향상 및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의 포상금 상향 조정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603, 2019.2.15).

- **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관계법령

공익신고자 보호법

[시행 2018. 2. 9.] [법률 제14567호, 2017. 2. 8., 타법개정]

제26조의2(포상금 등)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「상훈법」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. 다만, 포상금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1.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, 형의 선고유예·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
2.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
3.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, 지급대상,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

[시행 2018. 11. 1.] [대통령령 제29269호, 2018. 10. 30., 타법개정]

제25조의2(포상금의 지급사유)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
2.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

제25조의3(포상금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(이하 "포상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.

1.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: 기소유예,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, 형의 종류 및 경중
2.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: 행정처분의 내용,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
3.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: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·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
4. 제25조의2제1호: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금액
5. 제25조의2제2호: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

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공익침해행위의 조사·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
2.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·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
3.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
4.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
5.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

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

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.

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,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.

⑤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.